

의안번호	제 406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6월 일 (제348회)

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이양섭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5월 일

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

(이양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5월 일

발 의 자 : 이양섭·김학철·김인수·박우양·
이의영·황규철·윤은희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- 도내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유휴인력에게 일정액의 실비 지원과 임금지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전일 또는 반일 등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(안 제3조)
-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(안 제5조, 안 제6조)
- 생산적 일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또는 임금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체 : 불 입

5. 비용추계서 : 불 입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2016.5.6.~5.29(특이의견 없음)

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산적 일자리”란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.
2. “생산적 일손봉사”란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.
3. “도시지역 등 유희인력”이란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충청북도 도민 중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의 유희인력을 말한다.
4. “농가”란 농업·화훼·축산업·수산업·임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농장 및 농작물 가공·유통시설 등을 말하며,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업종 중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말한다.
5. “실비”란 충청북도·시군 및 농가·중소기업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·식비 등의 실 경비를 말한다.

제3조(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)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일 일손봉사 :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8시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
2. 반일 일손봉사 :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4시간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

제4조(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의 범위) 도시지역 등 유희인력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 농가 및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.

1.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·중소기업
2. 일정액의 실비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·중소기업
3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·중소기업 등

제6조(실비 규모 등) ①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·군수 등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일정액의 실 경비
2. 생산적 일손봉사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
3. 수송료 및 차량비 등

② 시장·군수 등 기관·단체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물품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

내에서 일정액의 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농가 및 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·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비의 종류와 규모,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실비 등 지급절차) ① 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시장·군수 등 기관·단체와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받는 농가·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사실을 확인한 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, 농가·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성실히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또는 농가·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한 시장·군수 등 기관·단체 및 농가·중소기업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등 기관·단체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생산적 일손봉사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기관, 단체와의 협력 등)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

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·군 및 관련단체·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

가.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(이하 “평균매출액등“이라 한다)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

나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
[별표 1] <개정 2015.6.30.>

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 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13. 코르크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D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2. 건설업	F	
23. 도매 및 소매업	G	
24. 음료 제조업	C11	
25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6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7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30. 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E	
31. 운수업	H	
32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J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3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4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N	
35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6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7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38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39. 금융 및 보험업	K	
40. 부동산업 및 임대업	L	
41. 교육 서비스업	P	

비고: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충청북도 생산적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일할 능력이 있는 도민에게 농가나 중소기업 일자리 제공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생산적 일손봉사자의 실비
- 생산적 일손 봉사자가 근로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
- 수송료 및 차량비 등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규모 등) ①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생산적 일손봉사자의 실비·보험료

나. 추계의 전제 : 일자리제공에 필요한 실비·보험료

다. 추 계 결 과 : 20년까지 생산적일손봉사 실비 등 3,800,000천원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21%, 시비 21%, 농가기업 58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)
세 출	3,800,000	300,000	5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일손봉사 실비 (보험료포함)	3,800,000	300,000	5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(☎ 043-220-3360)